

의안번호	제 96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8. 4.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
----------	----

제출년월일 : 1999. 8. 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화물등을 수송함으로 도로를 손괴하게 한자나 자동차 운송사업자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괴하는 차량을 사용한자에게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나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로법 제67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2조에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나 서산시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는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농어촌도로 손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해야할 사유가 발생됨

2. 주요골자

- 서산시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법에서 위임된 도로 손괴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만 서산시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로 전문개정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제67조, 제68조제1항 시행령 제35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시행령 제12조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서산시규제개혁 위원회심의('99. 6.23) 결과→폐지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도로손괴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67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부과·징수) ①도로손괴부담금의 산정은 시장이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도로손괴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수 있다.

③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납부방법) ①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내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부담금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 한다.</p>	<p>제3조(부담금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법시행령 제3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자로 한다.</p>	<p>제3조(부담금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법시행령 제3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자로 한다.</p>	<p>제3조(부담금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법시행령 제3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자로 한다.</p>	<p>제3조(부담금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법시행령 제3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자로 한다.</p>
<p>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로 복구비 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토록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p>	<p>제4조제1항 <삭제></p>	<p>제4조제1항 <삭제></p>	<p>제4조제1항 <삭제></p>	<p>제4조제1항 <삭제></p>
<p>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등)를 병행할 때에는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p>	<p>제6조 <삭제></p>	<p>제6조 <삭제></p>	<p>제6조 <삭제></p>	<p>제6조 <삭제></p>
<p>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7조 <삭제></p>	<p>제7조 <삭제></p>	<p>제7조 <삭제></p>	<p>제7조 <삭제></p>
<p>제8조(허가조건) 시장이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p>	<p>제8조 <삭제></p>	<p>제8조 <삭제></p>	<p>제8조 <삭제></p>	<p>제8조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u>①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1, 복구 기간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과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u></p>	<p>제9조 <삭제></p>
<p>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u>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원상복구 한다.</u></p> <p>②원인자는 <u>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 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u></p> <p>③시장은 <u>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u></p> <p>④시장은 <u>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u></p> <p>⑤하자 보증기간은 <u>복구공사의 준공일 부터 2년간으로 한다.</u></p>	<p>제10조 <삭제></p>
<p>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u>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u></p>	<p>제11조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굴착 복구 공사를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p>제12조 <삭제></p>
<p>제14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p>	<p>제14조 <삭제></p>

서산시소하천점 · 사용료등부과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소하천 · 점사용료등부과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의 산정기준 내용중 “연간 점 · 사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토지가격의(이하 “토지가격”이라 한다)3/100”을“연간 점 · 사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으로 하고 산정기준 다음에 비교란을 두어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서산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지1) 점 · 사용료등부과기준		(별표1) 점 · 사용료등부과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구 분	산정기준	비 고
1.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 · 사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토지가격의(이하“토지가격”이라 한다)3/100	1.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 · 사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1.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 정 안		수 정 안		
[별지1] 점·사용료등부과기준		[별표1] 점·사용료등부과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p>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p> <p>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서산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p>

개 정 안		수 정 안		
(별지1) 점·사용료등부과기준		(별표1) 점·사용료등부과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p>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p>